

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

가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1. 이용목적

- 1)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- 2) 채권추심
- 3) 마케팅
- 4)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2. 신용정보의 종류

1) 식별정보

-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 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2) 신용거래정보

- 개인신용거래정보: 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
- 기업신용거래정보: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 대지급정보, 어음 수표 부도정보,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

3) 금융질서문란정보

-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4) 신용능력정보

-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5) 공공기록정보

-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나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1. 제공대상자

- 전국은행연합회, 한국신용평가정보(주), 한국개인신용(주),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1)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·수집·보관·제공
- 2)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1) 식별정보
- 2) 신용거래정보
- 3) 금융질서문란정보
- 4) 신용능력정보

다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1. 보유 및 이용기간 : 상품폐쇄후 5년까지
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: 상품폐쇄후 5년 경과시 파기

라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
1. 은행 연계 계좌개설/연계 출금서비스(실명확인): KB국민은행
2. 증권 연계 계좌개설: 하이투자증권
3. 거래내역(잔고내역) 발송, 고객 고지사항 안내, 세미나 및 이벤트 안내, 투자 정보제공 등: 비즈뿌리오(다우기술), 슈어엠주식회사
4. 개인신용정보조회: 나이스평가정보
5. 펌뱅킹 자동이체서비스: (주)케이에스넷

마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1. 개인신용정보 이용·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보 요구권
 - 1) 신용정보주체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'신용정보법')」 제35조에 근거하여 당사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등 일부 목적은 제외합니다.
 - 2) 신청방법: 영업점에 내방하여 조회 또는 통보를 요구하거나 홈페이지 내 [개인신용정보동의 -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]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2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 - 1) 신용정보주체는 「신용정보법」 제37조에 근거하여 기존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때에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 별로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2) 신청방법: 영업점에 내방하시거나 고객센터(02-788-7000)에 전화하여 철회 신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 내 [개인신용정보동의 -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(「선택」수집·이용동의서(고객편의서비스제공용))]에서 항목 별로 '동의

하지않습니다'를 선택하여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3.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

1) 신용정보주체는 「신용정보법」 제38조에 근거하여 당사가 보유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정정합니다. 정정 처리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2) 신청방법: 국내 HTS [국내위탁계좌기본정보(화면번호 7101)] 또는 해외 HTS [위탁계좌기본정보조회(화면번호 7527)]에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, 영업점에 내방하시거나 고객센터(02-788-7000)에 전화하여 열람 또는 정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4.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

1) 신용정보주체는 「신용정보법」 제38조의3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본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「신용정보법」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리보관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관리하며 그 결과에 대해 통지합니다.

2) 신청방법: 영업점에 내방하시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바. 신용정보관리 보호인

1. 성명: 박석종
2. 직책: 준법감시인
3. 전화번호: 02-788-7085(FAX 02-788-7040)
4. 담당부서 연락처: 준법경영팀 02-788-7028